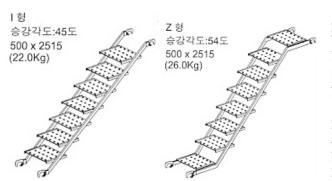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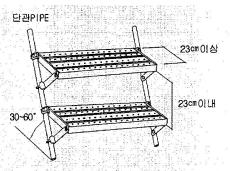
- C 11 2012
 - (라) 발판 높이는 24cm 이하이어야 하고,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 고정된 구조이어야 한다.
- (2) 조립형 가설계단

조립형 가설계단은 그림 4와 같이 발판을 단관비계의 지지대에 크램프를 사용하여 작업장의 환경에 적합하게 조립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.

- (가) 가설계단의 경사각은 30°~60°를 유지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나) 발판 너비는 23cm 이상으로 하고, 또한 그 바닥면은 미끄러짐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- (다) 발판 높이는 23cm 이하이어야 하고,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라) 단관비계와 크램프는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.



<그림 3> 일체형 가설계단(I형, Z형)



<그림 4> 조립형 가설계단

8. 가설계단 설치작업 중 안전 준수사항

- (1)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작업장소의 상황과 작업순서 등을 가능한 그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지시하여야 하며, 작업 중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.
- (2)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,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